

[사 건 명] 행심 2015-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 부존재 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

피청구인 : ○○여자고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부존재』 결정을 취소한다.

[재결이유]

I. 사건개요

가. 2014. 12. 2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0년 6월 ○○과 ●●’ 라는 제목의 글과 청구인이 ◇◇ 교도소 출소 후 ◆◆ 군청 주차요원으로 특채된 이유를 아는지 여부 및 내부사례 내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 2014. 12. 29.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하여 2015. 1. 2.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지 않은 정보이며 위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 1. 19.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통지에 불복하여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고,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26. 우리위원회로 청구 건을 이송하였으며, 2015. 1. 29. 접수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청구인이 ◇◇교도소 수용중에 ◆◆군수, ◆◆군 전체 마을 이장, 부녀회장 및 11개 읍면조합장에게 보낸 8개 항목의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여자고등학교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여자고등학교에서 정보부존재 통보를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III.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해 ○○여자고등학교에서 작성·취득하지 않은 정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청구내용에 대하여 아는 바 없기에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것이고, 2015. 1. 2. 피청구인의 정보 부존재 결정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1.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가.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4. 12. 23.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 피청구인은 2015. 1. 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판단

- 1)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2) 이 사건 사립학교인 ○○여자고등학교장을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여자고등학교장이 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 청구이다.

V.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